



민법 ·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문 인접 아파트에서 나오는 소음때문에 피해가 막대한데

<문> 저는 어느 대학교 근처에 지은 지 20년 정도 된 8기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파트 바로 옆에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얼마전 지하 3층 주차장을 겸비한 15층짜리 아파트가 학생 전용 아파트로 지어졌습니다. 아파트에는 주차장을 포함하여 건물 곳곳에 대형 모터로 작동되는 환풍기가 저의 아파트와 마주 보며 설치돼 있으며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24시간 환풍기 작동에 따른 굉음과 진동으로 저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창문을 늘 닫고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기와 더위 문제, 불충분한 수면 등 불평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는 아파트를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귀하는 대학교 아파트를 상대로 「Nuisance」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금지명령

(Injunction)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Nuisance란 건강에 해롭거나 신체적 감각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들 혹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자유로운 사용과 그 곳에서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아파트와 바로 인접한 대학교 아파트에 설치된 대형 모터로 작동되는 환풍기가 24시간 내내 가동되면서 내는 소음과 진동은 귀하의 아파트 입주자들의 쾌적한 생활 공간의 사용과 유지에 절대적 피해를 끼치는 Nuisance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대학교 아파트가 환풍기를 저녁시간과 취침시간에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금지명령 혹은 환풍기의 소음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소음장비의 설치명령과 더불어 귀하의 아파트 운영의 재정적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캘리포니아주의 혼인신고 절차는

<문> 저희는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되는 예비 신랑신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곧 결혼하는데 혼인신고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우선 신랑신부는 각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혼인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첫째, 예비 신랑신부는 의사의 진단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매독, 전염성 질병, HIV 검사 여부, 여성의 경우 홍역에 대한 면역성 여부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진단서를 받은 지 30일 내에 해당 카운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Marriage License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정부가 발급한 Marriage License는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셋째, 카운티로부터 Certificate of Registry를 받아서 클러키 보는 앞에서 법적 혼인의 성립에 필요한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입한 후에 결혼식을 거행할 성직자나 그에 준하는 주례자에게 전달합니다. 넷째, 담당 성직자나 주례자 앞에서 서로가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선포하는 식을 거행합니다. 다섯째, 성직자나 주례자는 Marriage License를 확인하고 Certificate of Registry에 혼인 성립의 증명이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고 사인하여 두가지 서류의 원본을 결혼식이 거행된 지 4일 이내로 다시 카운티에 등록하면 됩니다.

문 이혼의 경우, 별거시작 시기의 결정과 그 중요성은

<문> 이혼할 경우 정확히 별거가 시작된 시기는 어떻게 결정하며 왜 정확한 별거시기가 중요하니까.

<답>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 따르면 별거시기(Date of Separation)는 부부간의 관계가 혼인을 지속시키기 위한 화해의 의도와 가능성이 전혀 없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시기를 말합니다.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주장하는 별거시기가 다를 경우 법원은 이혼 당사자들이 부부로서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종결하려는 주관적 의도를 갖게 된 시기를 별거시기로 결정하며 이러한 주관적 의도가 성립된 시기를 판가름하기 위하여 논란이 되는 기간에 당사자의 상대에 대한 태도·대화·행동 등을 나타내는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지 부부중 한 사람이 집을 나가거나 거주지를 달리한다는 사실 하나가 별거시기를

확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으며 법원은 논란 기간에 부부가 재정적으로 큰 변동 없이 하나의 가족단위로 공동의 가계를 유지시켰는지 여부, 상대에 대한 감정표현 상태, 부부간 성관계, 주변 친지 혹은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계속 부부로 행세했는지 여부, 부동산 혹은 동산의 공동명의 구입, 부부 공동 세금보고, 부부간 선물 혹은 서신 교환, 재결합을 위한 시도 등 사실적 증거를 종합적 검토하여 별거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별거시기가 갖는 법적 중요성은 별거시기 후에 획득한 모든 수입과 재산은 개인재산으로, 별거시기 후에 발생한 모든 부채는 개인부채로 인정되며 별거시기에 준해 부부 공동소유의 모든 재산과 부채 액수가 책정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 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서 면담을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등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집부 내 실 주소 :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 90010